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(성일종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695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9.

발 의 자:성일종・어기구・강대식

인요한 • 이종배 • 최수진

김소희 · 장동혁 · 박덕흠

김상욱 · 최보윤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전 세계 청년들의 순례와 친교를 위한 세계청년대회는 1986년 3월 23일 로마에서 제1차 세계청년대회가 개최된 이래 2 ~ 3년 마다 대륙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음.

2027년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천주교행사를 넘어 전 세계 청년들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로서 범정부 차원의다각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함.

이에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국제적 교류 및 체험활동 촉진을 통해 청년발전과 청년지원 및 국민의 종교문화와 여가활동 활성화, 그리고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원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(안 제4조제1항).
- 나.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개최를 위하여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조직위원회(이하 '조직위원회')를 운영함(안 제5조제1항).
- 다. 조직위원회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·법인·단체 등에 행정적·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수 있으며,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하도록함(안 제6조제1항).
- 라. 조직위원회는 「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.
- 마.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과 종사자·참여자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 도록 함(안 제8조).
- 바. 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법률에서 정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.
- 사.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휘장사업 등의 수익사업과 기념주화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 및 제12

조).

- 아.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진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7조).
- 자. 세계청년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국무 총리 소속으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하 고, 위원장은 국무총리,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,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, 그 밖의 국무위원 등을 위원으로 함(안 제18조).
- 차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세계 청년들에게 청년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등을 포함한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을 신축 및 개축·보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9조).
- 카. 법무부장관은 세계청년대회를 위하여 사증발급 또는 입국심사를받는 외국인 등에 대하여 출입국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함(안 제21조).
- 타. 보건복지부장관은 세계청년대회 참가자의 보건안전에 대하여 적극 적으로 협조하도록 함(안 제22조).
- 파.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, 서울 특별시장은 이를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4조).

하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세계청년대회 이후 국제순례지에서 국민의 종교문화와 여가활동 활성화 및 국제친선 활동을 위하여 제2조제2호 직접관련시설 중 다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을 지원할 수 있음(안 제26조).

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

제1조(목적) 이 법은 2027년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서울 세계청 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국제적 교류와 국 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"이란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(이하 "세계청년대회"라 한다)에 관한 직접관련시설, 여건조성시설 및 국 제순례지관련시설을 말한다.
- 2. "직접관련시설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
 - 가. 세계청년대회 운영 관리 시설
 - 나. 대회장과 대회장 관련 편의시설
 - 다. 체험장과 체험장 관련 편의시설
 - 라. 전시관
 - 마. 대회장 및 체험장, 전시관 등 진입도로
 - 바. 응급의료시설
 - 사. 전기·전자·통신·가스 시설
 - 아. 그 밖에 세계청년대회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

정하는 시설

- 3. "여건조성시설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
 - 가. 세계청년대회 운영 및 접근망 구축을 위하여 개설·정비가 필 요한 교통시설
 - 나. 직접관련시설과 관련된 도로표지판 및 홍보안내시설
 - 다. 그 밖에 세계청년대회 여건조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
- 4. "국제순례지관련시설"이란 교황청이 공식 승인하고 선포한 순례 길과 국제성지(이하 "국제순례지"라 한다)와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
- 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이 법 중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의 설 치·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법 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 - ② 청년발전,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「청년기본법」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청 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 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청년대회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제5조(조직위원회의 운영) ① 서울대교구 교구장은 세계청년대회의 성 공적인 준비 및 개최를 위하여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조직위원회 (이하 "조직위원회"라 한다)를 운영한다.
 - ② 조직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.
 - ③ 조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세계청년대회 종합계획 수립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
 - 2.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의 설치 · 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· 시행
 - 3.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의 설치 · 관리
 - 4. 세계청년대회 참가국 및 국내외 종교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
 - 5. 그 밖에 세계청년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 - ④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- 제6조(국가 등의 지원) ① 조직위원회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·법인·단체 등에 행정적·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해당 기관은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·운영, 세계청년대회의 준비·운영,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국제순례지관련시설의 설치·운영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국비 보조율에 준하여

지원한다.

- 제7조(기부금품의 접수) ① 조직위원회는 「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대테러·안전 대책 등) ①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 과 종사자·참여자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·안전 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대테러·안전 대책기구를 설 치·운영할 수 있다.
- 제9조(부담금 등의 감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수 있다.
 - 1. 「하천법」에 따른 하천 점용료·사용료
 - 2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
 - 3. 「도로법」에 따른 점용료
 - 4. 「수도법」 및 「하수도법」에 따른 원인자부담금
 - 5. 그 밖에 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감면이 필요한 부담금

- 제10조(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)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면제한다.
- 제11조(수익사업) ①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 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 - 1. 휘장사업
 - 2. 기념주화 등 기념품의 판매
 - 3. 그 밖에 세계청년대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 - ②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청년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·법인·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.
- 제12조(기념주화의 판매) ①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.
- 제13조(기념우표 등의 발행)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과학기술정보통

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- 제14조(수수료 등)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를 위한 업무나 그 밖에 세계청년대회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.
 - 1. 조직위원회가 관리하는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
 - 2. 조직위원회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
 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제15조(자료의 제공요청) ① 조직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·공공기관·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세계청년대회와 관련된 조사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잔여재산의 귀속)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조직위원회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과 유 사한 단체에 기증한다. 다만, 정관으로 잔여재산의 귀속 방법을 정 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3 조를 준용한다.
- 제17조(자원봉사자) ①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의 원활하고 효율적 인 운영과 진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.

- ② 조직위원회는 자원봉사자의 신분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하고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.
- 제18조(정부지원위원회) ① 세계청년대회와 관련된 주요 지원 대책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정부지원위원회(이하 "지원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,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,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,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사람으로 한다.
 - 1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 - 2. 외교부장관
 - 3. 법무부장관
 - 4. 행정안전부장관
 - 5. 여성가족부장관
 - 6. 농림축산식품부장관
 - 7. 산업통상자원부장관
 - 8. 보건복지부장관
 - 9. 환경부장관
 - 10. 국토교통부장관
 - 11. 해양수산부장관

- 12. 국무조정실장
- 13. 서울특별시장
- 14. 경찰청장
- 15. 소방청장
- 16. 조직위원회 위원장
- 17. 세계청년대회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
- 18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
- ③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. 이 경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소속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-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할 안건을 검토·조정하고 지원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지원실무위원회(이하 "실무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이 경우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9조(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는 세계 청년들에게 청년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 한 시설 등을 포함한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을 신축 및 개축·보수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 사업을 대통

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청년대회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 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.

- 제20조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관한 특례) 조직위원회는 원활한 대회 접근과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계청년대회 종료일까지는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받은 사업용 자동차를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(조직위원회가 대회 관계자에게 발급하는 등록카드를 소지한 자에 한정한다)에게 유상으로 다시 대여하거나 해당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할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.
- 제21조(출입국관리의 협조) 법무부장관은 세계청년대회를 위하여 사증 발급 또는 입국심사를 받는 외국인 등에 대하여 출입국 과정에 적 극적으로 협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22조(보건안전의 협조) 보건복지부장관은 세계청년대회 참가자의 보건안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23조(세계청년대회 휘장 등의 사용) ①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·마스코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세계청년대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,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「상표법」 및 「디자인보호법」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.

- ②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「상표법」 및 「디자인보호법」의 벌칙규정을 준용한다.
- 제24조(권한의 위임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할 수있다.
 - ② 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협의하여야 한다.
 - ③ 서울특별시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- ④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- 제25조(청년단체 활동 지원)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세계청년대회 종합계획에 따라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를 위한 인적자원 양성 및 청년단체 활동 육성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26조(후속사업)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세계 청년대회 이후 국제순례지에서 국민의 종교문화와 여가활동 활성화 및 국제친선 활동을 위하여 제2조제2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정한다), 제7조부터 제14조까지, 제18조, 제19조 및 제24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유효기간) 이 법은 조직위원회가 해산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. 다만, 제26조는 203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- 제3조(경과조치) 2024년 8월 7일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재단법인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를 제5조에 따른 조직위원회로 본다.